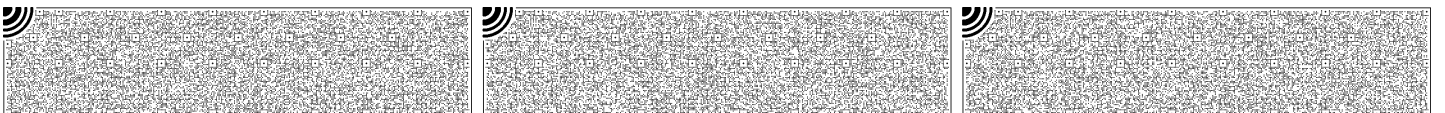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6 - 203호

의 안 명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서비스 도입 방안

대상기관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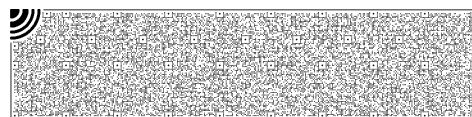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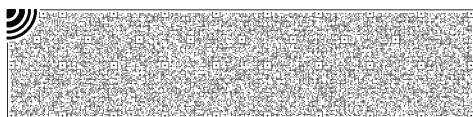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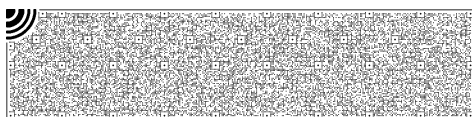
의 결 일 2026. 6. 15.

주 문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서비스 도입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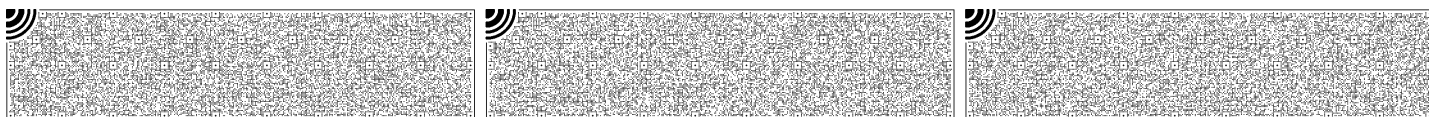
【별지】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서비스 도입 방안

202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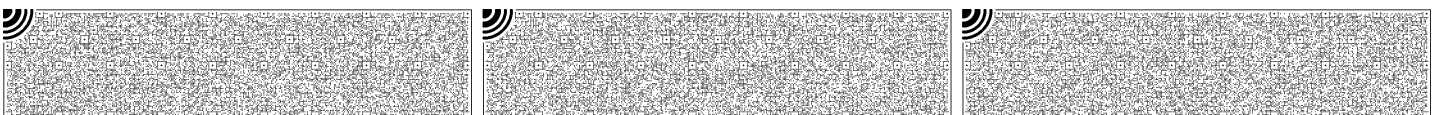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

I. 추진배경	1
II. 일반현황	2
III. 국민생각함 설문 결과	8
IV. 문제점	11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한계	11
2. 다수 금융기관 방문에 따른 국민 피로	12
3. 금융기관 상속절차의 표준화된 기준 부재	15
V. 개선방안	17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 ...	17
2. 상속 금융재산 표준 처리 기준 마련	18
3.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서비스 체계 구축	19
VI. 조치사항	23

※ 불임 : 관련 법규



I.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금융기관 다양화와 금융거래 증가로 인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다수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상속인들은 상속 과정에 어려움 호소
 - ※ 최근 5년 평균 사망자 수는 연 34만 명, 상속재산은 연 평균 47조 원(상속세 신고기준)
- 정부는 상속인이 한 번의 조회 신청만으로 피상속인의 자산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서비스* 제공
 -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금융감독원 '98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행정안전부 '15년~)
-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실제 상속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일일이 여러 기관에 발품을 팔아야 하는 고충 발생
 - 특히, 상속 금융재산의 경우 특성상 다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상속인은 수 개에서 많게는 십여 개 금융기관 방문 필요
 - ※ 최근 5년간 신고된 상속세 대상 중 금융자산(유가증권 제외)은 한 해 평균 5조 8천만 원 이상
- 또한,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 종류 및 신청 양식 등이 다르고 복잡한 내부 처리절차 및 관행 차이 등으로 가족 잃은 국민들이 상속 과정에서 불편 증가
- 이에 금융기관의 상속처리에 대한 표준 기준을 수립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원스톱·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처리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추진경과】 국민생각함 설문('25.12월) ⇨ 실태조사 및 기관(금감원 및 금융협회) 협의(2~4월)
⇨ 개선안 마련 및 의견조회(5월) ⇨ 전원위 의결(6월)

II. 일반현황

□ 상속

- (개념)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에게 그 자산에 관한 권리와 채무 등 의무의 일체를 주고 받는 행위

* 사망 이외 실종선고(행방·생사불명 5년 이상), 인정사망(공무원의 사망보고) 포함

- (상속의 순위) 피상속인의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하되, 배우자의 경우 ①, ②위와 동 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

<상속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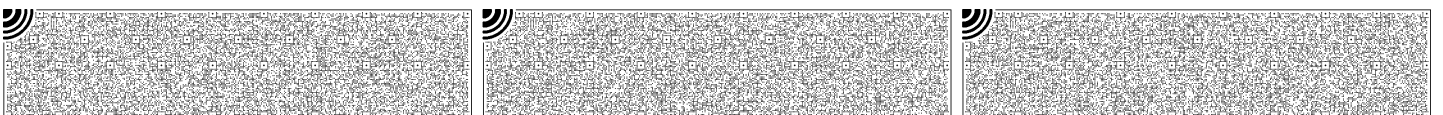
구분	상속인	공동상속인	비고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보다 50% 가산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 특별연고자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 피상속인을 요양하고 있던자, • 기타 특별한 연고자가 법원에 청구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5순위	특별연고자		
6순위	국고귀속		

※ (대습상속)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 또는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사망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같음하여 상속인이 됨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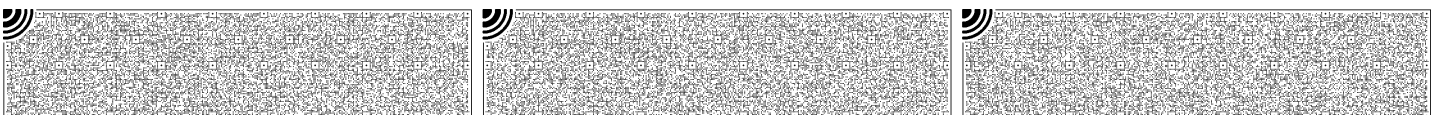


□ 상속 주요 절차

- (상속개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개시
- (상속자산 등 확인) 상속인의 재산(금융, 부동산, 연금, 현물 등)과 채무(채무, 미납세금 등)을 확인, 상속인 연락 등 법정상속인 확인
- (상속 결정)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에서 결정
 - ① 단순승인 : 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채무 등 의무의 일체를 승계
 - ※ 상속재산의 임의 처분, 상속 결정기간 경과 등은 ‘법정단순승인’으로 처리
 - ② 한정승인 :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 ※ 상속인의 채무액을 모두 매각·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한해서 상속지분별 지급
 - ③ 상속포기 : 상속 재산의 권리와 채무 의무 등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그 권리와 의무는 차순위 상속인 순으로 차례로 귀속
 - ※ 다만, 상속 포기자는 그 다음 상속인이 상속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자산 관리 책임 부여(모든 상속인이 포기해야 상속포기 효과가 발생)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제외하고 산정된 금액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0%)

※ 상속받은 자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부동산, 차량 등)로 평가



□ **최근 상속관련 현황** (국가데이터처 통계)

○ (**사망자 수**) 최근 5년 간 국내 연 평균 사망자 수는 약 34만 명 상회

<최근 5년 사망자 수>

(단위 : 명)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사망자수	317,680	372,939	352,511	358,569	363,389

※ 동일 기간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80세, 여성 86세

○ (**자산현황**) '24년 기준 가구별 평균 자산 규모는 5억 4천만 원으로 '20년 대비 약 9천 5백만 원(21.3%) 증가, 이중 부채가 약 9천만 원(16.9%)이며 순자산은 약 4억 5천만 원(83.1%)

<최근 5년 가구별 보유자산>

(단위 : 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 자산	44,543	50,253	54,772	52,727	54,022
부채	8,256 18.5%	8,801 17.5%	9,170 16.7%	9,186 17.4%	9,128 16.9%
순자산	36,287 81.5%	41,452 82.5%	45,602 83.3%	43,540 82.6%	44,894 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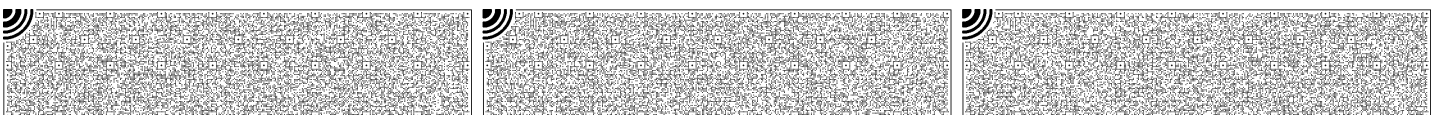
※ 자산 :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한 모든 경제적 가치(재산+부채)

○ (**상속세 신고 현황**) 최근 5년 간 상속세 신고 상속자산은 연 평균 47조 원에 달하며, 피상속인 수도 연 평균 약 1만 7천 명으로 나타남

<최근 5년 상속세 신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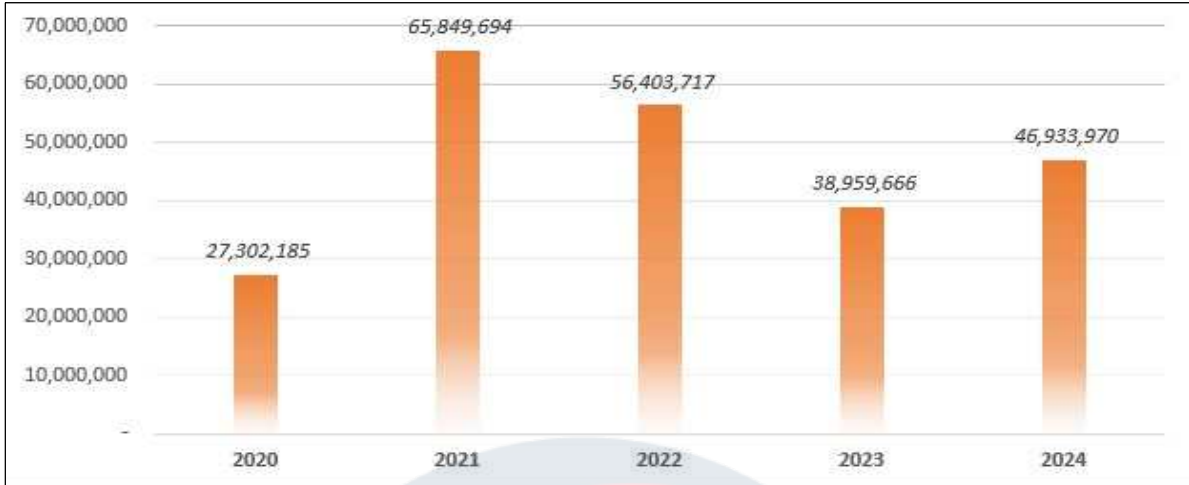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속자산 (백만원)	27,302,185	65,849,694	56,403,717	38,959,666	46,933,970
피상속인수 (명)	11,521	14,951	19,506	18,282	20,167

※ 상속자산 및 피상속인수는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한 수치



<상속세 신고 상속자산>

(단위 : 백만원)



<상속세 납부 상속자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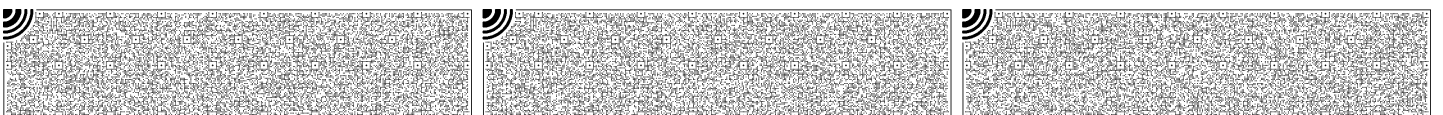


- 그러나 각종 세액공제에 따른 과세미달 상속자산 및 상속인수를 감안하면, 실제 상속인 및 자산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

■ 상속세 인적공제 범위

1. 배우자+자녀가 있는 경우 : 10억원 공제(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
2. 배우자만 있는 경우 : 7억원 공제(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공제 2억원)
3. 자녀만 있는 경우 : 5억원 공제(일괄공제 5억원)

※ 일반적 기준이며, 사전증여 합산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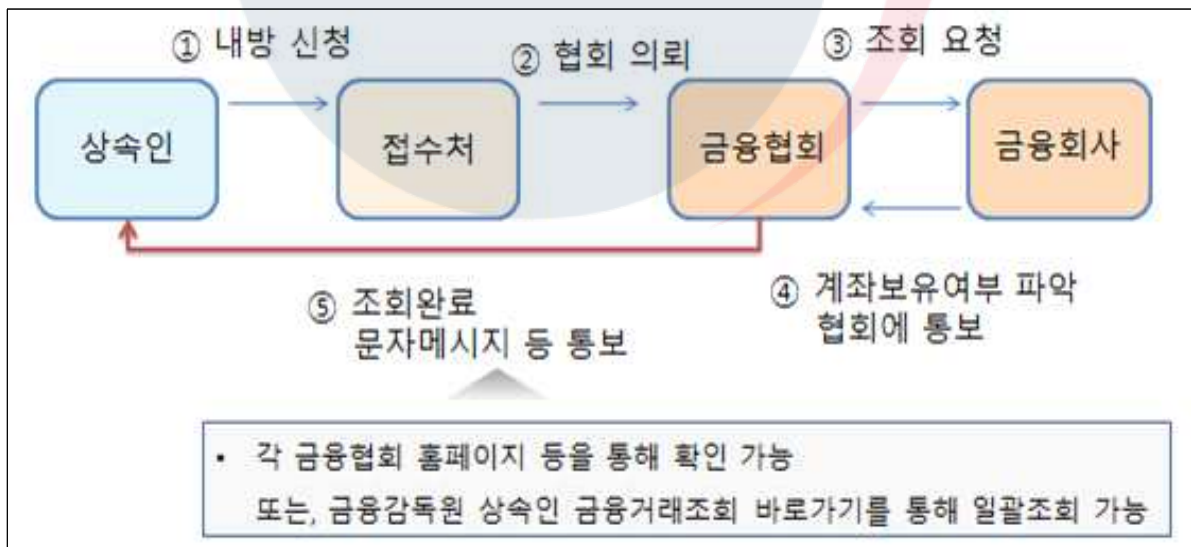


□ 정부 상속 지원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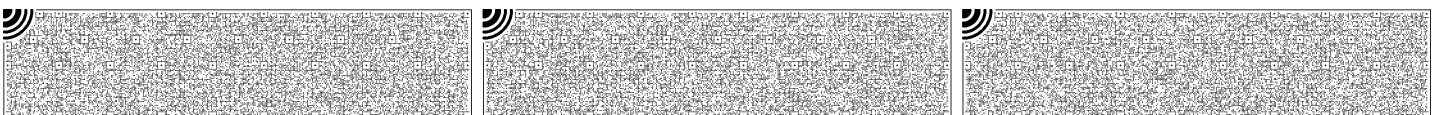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금융감독원)

- (개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조회를 하기 위해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덜고자 금융감독원에서 **통합 조회서비스** 제공('98년 도입)
 - *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대상)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및 연금보험 등 **금융회사**
- (조회범위) 사망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세금체납정보, 연금가입정보 등
 - ※ 대다수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등을 통해 참여중이나, 일부 조회 불가능 회사 존재
- (신청방법) 방문(금감원 본·지원, 은행, 보험사, 시·구, 읍·면·동) 및 '정부24' 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사망 후 1년 이내에는 각 지방정부(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통합신청 가능(정부24 포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흐름도>



※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결과를 개인에게 서면 통보는 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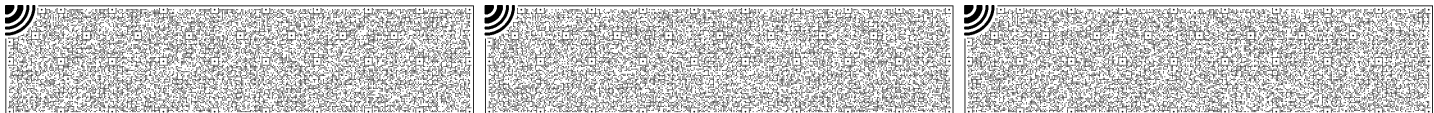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행정안전부)

- (개요)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20여 종)를 한 번에 통합 신청
 - ※ 안심상속서비스('15. 6월)로 개시 이후, **17. 8월 온라인(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통**
- (조회범위)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여 종의 재산 정보
 -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금융정보와 더불어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의 재산정보를 통합 조회

<통합 조회 종류>

- ① 지방세정보(채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채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 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⑧ 사학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⑨군인연금정보(가입유무), ⑩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⑪건축물정보(소유내역), ⑫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 상품(가입유무), ⑬군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⑭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⑮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⑯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 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여부, ⑱어선정보(소유내역), ⑲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⑳상조상품 가입여부

- (신청방법)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방문(시·구, 읍·면·동) 및 '정부24' 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또는 이후 방문 및 '정부24'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온라인 제출
 -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자동 신청
- (결과확인) 해당기관에서 문자, 이메일 등 결과 확인방법 안내
 - ※ 금융재산(금감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홈페이지), 토지·건축물·자동차(우편, 문자, 방문 중 선택), 공무원연금·공제회 등 기타(개별기관이 문자 발송)



Ⅲ. 국민생각함 설문 결과

1 설문 개요

- ◆ 설문제목 : “돌아가신 부모님 예금 찾기, 은행마다 발품 팔아야 할까요?”
 - ◆ 설문기간 : 2025. 12. 18. ~ 12. 31.(14일)
 - ◆ 참여인원 : 총 3,908명 * 설문 3,615명, 댓글 124명, 추천 163명, 비추천 6명
 - ◆ 설문인원 : 총 **3,615명** * 일반국민 1,910명, 국민패널* 1,705명
- *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 모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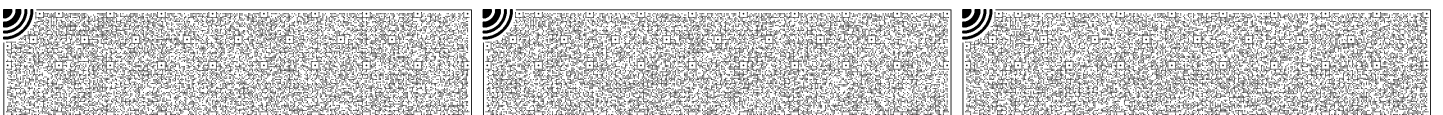
2 결과 요약

- 상속 금융자산 인출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은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92.4%가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 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나타남

【서비스 핵심 절차】

- (전자 합의) 정부24에서 상속인 전원이 본인 인증 후 '대표상속인' 지정 및 자금 수령 위임 전자 약정 체결
- (일괄 입금) 대표상속인 명의의 '상속자금 관리용 가상계좌'로 모든 금융자산 자동이체
- (자동 정산) 가상계좌에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약정된 비율대로 상속인들에게 자동 송금

- 제도 도입 시 가장 기대되는 점은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원스톱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 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제도 이용 시 우려되는 점은 △대표 상속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36.7%) △디지털 기기 사용이 미숙한 고령층의 소외(26.1%) 등의 순



3 설문 결과

- (상속 처리 경험) 최근 5년 이내에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61.5%,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은 38.5%

보기		합계		국민패널		일반국민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1	있다	1,392	38.5%	526	30.9%	866	45.3%
2	없다	2,223	61.5%	1,179	69.1%	1,044	54.7%

- (상속 금융자산 인출 과정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보기		합계		국민패널		일반국민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1	여러 금융기관(은행, 보험, 증권 등)을 각각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732	35.3%	325	39.6%	407	32.6%
2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 양식과 기준이 달라서 겪는 혼란	558	26.9%	166	20.2%	392	31.4%
3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	593	28.6%	252	30.7%	341	27.3%
4	생업 등으로 인해 은행 영업시간 내에 방문하기 어려움	181	8.7%	73	8.9%	108	8.6%
5	기타	7	0.3%	5	0.6%	2	0.2%

-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찬반의견) 전체 응답자의 92.4%*가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

* '매우 찬성한다'(63.6%)와 '찬성한다'(28.8%)의 합계

**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 상속인 간의 전자적 합의를 통해 대표상속인 명의의 가상계좌로 자금을 일괄 수령(집금)하고, 상속인들에게 자동 분배

보기		합계		국민패널		일반국민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1	매우 찬성한다	2,298	63.6%	1,172	68.7%	1,126	59.0%
2	찬성한다	1,041	28.8%	407	23.9%	634	33.2%
3	보통이다	223	6.2%	98	5.7%	125	6.5%
4	반대한다	30	0.8%	15	0.9%	15	0.8%
5	매우 반대한다	23	0.6%	13	0.8%	10	0.5%



-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 시 기대되는 점)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원스톱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이 37.9%로 가장 높음

보기	합계		국민패널		일반국민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1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원스톱'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	2,067	37.9%	1,007	39.0%	1,060	36.8%
2 복잡한 종이 서류(인감증명서 등) 준비 부담 해소	1,417	26.0%	630	24.4%	787	27.3%
3 투명한 자금 집금 및 자동 분배로 상속인 간 분쟁 예방	771	14.1%	329	12.8%	442	15.4%
4 숨은 소액 금융자산(휴면예금 등) 까지 꼼꼼하게 챙길 수 있음	766	14.0%	392	15.2%	374	13.0%
5 상속 경험이 없는 이용자로 쉽게 진행 가능	438	8.0%	222	8.6%	216	7.5%

-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이용 시 우려되는 점) '대표상속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3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보기	합계		국민패널		일반국민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1 해킹 등 보안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1,267	24.7%	592	24.0%	675	25.3%
2 대표상속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	1,883	36.7%	966	39.2%	917	34.4%
3 디지털 기기 사용이 미숙한 고령층의 소외 문제	1,338	26.1%	597	24.2%	741	27.8%
4 착오 송금 등 시스템 오류 가능성	344	6.7%	156	6.3%	188	7.1%
5 특별히 우려되는 점 없음	299	5.8%	155	6.3%	144	5.4%

- (상속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상속 절차의 간소화 및 상속 세금 처리 지원,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 등

(상속 절차의 간소화 필요)

- ▶ 상속 서류의 전자 제출·공유를 통한 간소화 필요(전자화·표준화 요구)
- ▶ 정부 24 등에서 상속 절차를 단계별로 확인 할 수 있는 안내 필요

(금융기관 상속 처리의 분절성과 통합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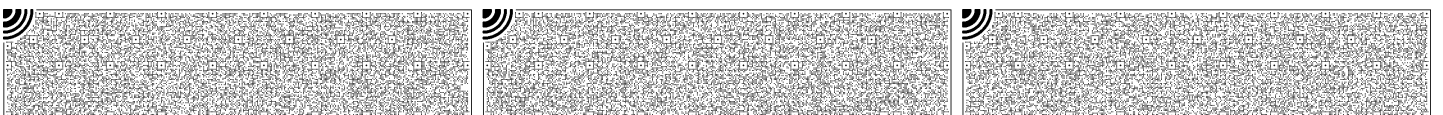
- ▶ 한 번의 동의로 모든 금융기관(주식, 보험, 채무 등) 및 부동산 등에도 범위 확대 요구
- ▶ 금융 상속 처리가 조회, 인출, 세금 납부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

(상속 세금 처리 지원)

- ▶ 상속 개시 후 자동으로 세금을 공제되도록 하여 편리한 세금 처리 필요
- ▶ 상속세 사전 예측 및 분할 납부 지원 등 세금 처리 과정의 디지털 전환 필요

(제도 이용 지원 및 안전성·편의성 강화 등)

- ▶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 악용방지 등을 위한 AI 시스템 개발 필요
- ▶ 상속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 도입 필요



Ⅳ. 문제점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한계

□ 금융기관 다양화 및 조회서비스 이용 증가

- 상속 금융거래 조회 대상은 총 **14개*** 금융협회 및 기관 소속의 은행, 조합, 보험, 증권, 여신, 대부기관 등 수십여 개 금융회사 해당
- * 예금보험공사, 전국은행연합회(농·수협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탁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예탁결제원, 우체국, 한국대부금융협회
- 이 때문에 피상속인의 복잡한 금융재산 파악을 위한 상속인의 조회 서비스 이용률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25년 기준 **85.5%** 이용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률>

(단위 : 명, 건)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사망자	317,680	372,939	352,511	358,569	363,389
상속인 조회서비스	226,742 (71.4%)	267,338 (71.7%)	275,811 (78.2%)	296,473 (82.7%)	310,738 (85.5%)

※ 금융감독원 실적자료 및 인구동향조사(kosis)

□ 피상속인 금융재산 조회 정보 미흡

- 대부분 금융기관이 피상속인 계좌의 잔액, 부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금융기관은 '조회가 불가' 하거나 계좌 잔액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존재 여부만 제공'
- 이 때문에 잔고 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 결정, 상속인



간 분할협의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결국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경우 발생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정보연계 미흡 현황>

(단위 : 개)

내용	구분	전체 기관수	해당 기관수
조회 불가	여신금융협회	61	15(24.6%)
	손해보험협회	17	1(5.9%)
잔액 정보 미제공 (예금·대출 등 존재 여부만 제공)	금융투자협회	63	63(100%)
	신협중앙회	862	862(100%)
	한국예탁결제원	1	1(100%)

※ 권익위 실태조사('26. 4월)

2 다수 금융기관 방문에 따른 국민 피로

□ 상속 금융재산 증가

- 최근 5년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볼 때 상속 금융재산은 한 해 평균 **5조 8천억 원 이상**으로 전체 상속자산의 12.4%에 달함
- 또한, 상속세 신고대상 금융재산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24년 7조원을 넘어, '20년 대비 **44.2%(↑3조 1천억 원)** 증가
- 그러나 상속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각 금융기관별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을 조회할 수 있을 뿐, 실제 상속을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별 별도의 신청·심사 등을 위해 영업점 방문 필요
- 특히, ▲금융재산 특성상 다수 금융기관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점, ▲해당 통계수치는 과세미만 상속 금융재산은 포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상속인이 상속 금융재산을 찾기위한 개별 금융 기관 대응에 따른 부담은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

<자산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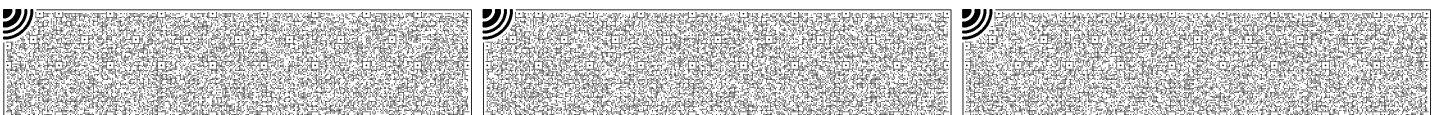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계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자산
평균	47,089,846	7,919,046 (16.8%)	17,162,332 (36.4%)	12,467,930 (26.5%)	5,819,232 (12.4%)	3,721,308 (7.9%)
2020	27,302,185	6,178,439	10,607,873	4,681,571	3,927,847	1,906,456
2021	65,849,694	7,759,080	15,748,698	30,609,763	5,865,495	5,866,658
2022	56,403,717	8,844,828	20,735,056	17,263,700	6,310,466	3,249,667
2023	38,959,666	8,246,621	18,539,878	3,611,779	5,954,349	2,607,040
2024	46,933,970	8,566,260	20,180,153	6,172,839	7,038,001	4,976,718

* 해당 연도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한 수치
 ※ 「국세통계」,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 방문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

- 상속 금융재산 보유 금융기관들은 '정당한 상속인 확인' 및 '증빙 서류 접수' 등을 위해 상속인의 영업점 방문 요구
- 그러나, 상속 금융재산은 수 개에서 많게는 십여 개 금융회사로 흩어져 있어 일일이 기관별 발품을 팔아야 하는 고충 야기
 - 일부 금융기관은 정확한 잔고, 거래내역 등 세부내용 조회의 경우도 추가 서류제출 요구 및 내방 원칙 고수
 - 특히, 서류보완을 이유로 재방문 요구 등 상속 과정에서 수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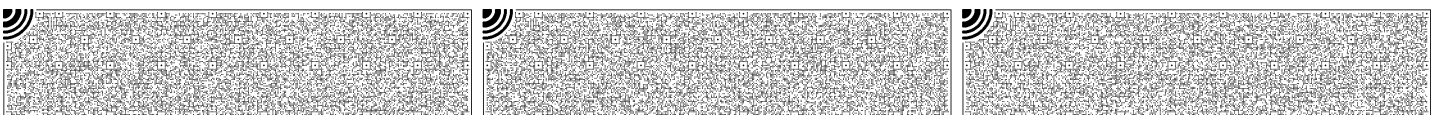


과도한 방문 절차로 인해 가족 잃은 국민의 고통 가중

- 또한, 온라인 banking 등 전자금융 확산으로 점차 금융권 영업점이 축소되고 있어,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국민의 시간·비용 부담 증대

<관련 민원 사례>

- 상속재산조회시 증권회사는 "잔고 있음"만 표시되고, 거래 내용이나 금액을 알려면 방문하라고 함. 만약 소액인 경우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감수 할지 의문이다. 정확한 보유주식, 잔고금액을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해달라. (국민신문고, '26.1월)
- 상속조회 후 OO은행에 거래조회를 문의하니 예금인출도 아닌데 방문하라 하고 이미 상속조회를 위해 낸 서류가 있는데, 또 다시 5종의 중복서류를 내야 거래조회가 가능하다고함. 피상속인이 거래한 금융기관이 수십군데라면 수십군데를 몇 번씩 찾아다녀야 상속받을 수 있다. 시정해달라. (국민신문고, '24.1월)
- 소액 보험금을 받는데도 복잡한 여러 서류와 상속인 모두의 방문 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함. 상속인들이 같은 지역에 모여사는 것도 아닌데 기껏 몇 천원 찾는 데 여러 서류발급 수수료와 교통비까지 써야하는지... (국민신문고, '21.3월)



3 금융기관 상속절차의 표준화된 기준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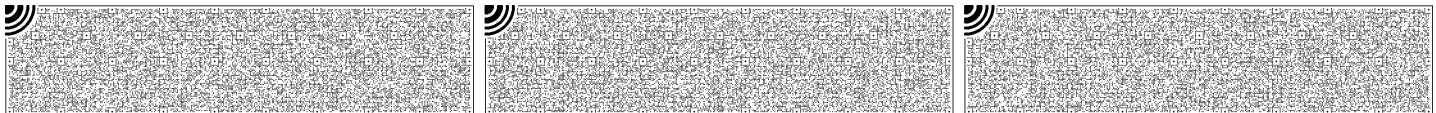
□ 동일 서류의 금융기관별 반복 제출

- 상속을 받으려면 '정당한 상속인의 증명' 등 심사를 위해, 각각의 금융기관 마다 다수의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

<상속인 주요 제출서류>

유형	제출서류	용도	비고
1,2순위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상속인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범위 확인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피상속인 사망 및 사망시기 확인	
3,4순위 및 대습상속 상속인 등	피상속인 제적등본	추가상속인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 상속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 경우
미내점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	3개월 이내 발급분
협의분할	재산분할협의서 또는 법원 분할결정서	재산분할 내용	
유언상속 유증	수유자 인감증명서, 유언 증서	유언에 의한 상속분 등 확인	(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 유언방식이 공정증서인 경우 제출 생략
	법원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	유언서의 유효성 확인	
미성년자 상속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범위 확인	
피성년 후견인 등 상속인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해외거주자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영사확인 등)	대리관계 및 미내점 해외거주자 상속인 의사 확인	상속인 등이 비거주자인 경우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상속내역 확인	

※ 금감원 9개 금융업 협회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개선, 보도자료中(2024.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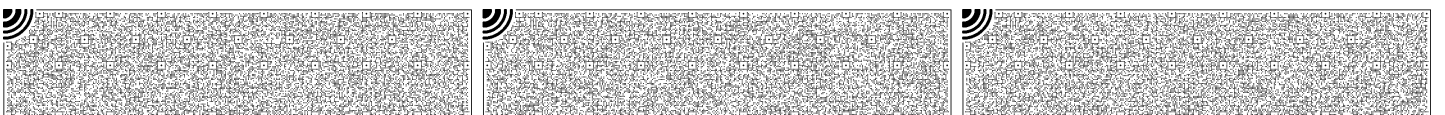


□ 요구 서류 및 양식 제각각

- 「민법」은 상속 순위, 상속 종류, 법적상속분 등 법적 권리관계만 정하고 있고, 실제 현장의 상속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은 부재
 - 이 때문에 금융기관별 요구하는 서류 종류나 각종 신청양식 등이 다르고, 행정처리 내규 및 관행의 차이로 인해 상속 과정에서 국민 혼란과 고충 가중
 - 또한, 금융기관은 법적분쟁, 책임소재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기관 관행*을 고수하며 상속 행정처리 간소화 등에 소극적 자세
- * 내방 원칙 민원처리, 과도한 서류요구, 소극적 정보제공 등

<관련 민원 사례>

-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상속재산조회로 알게된 금융재산 상속 때문에 은행, 보험 회사 등을 방문하는데 요청하는 서류나 작성 양식, 절차 등이 다 달라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각 금융기관이 표준화된 서류양식과 절차를 진행해 유족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 (국민신문고, '24.4월)
- OO은행에 상속 예금 인출을 문의하니, "상속예금 귀속동의서" 1장에 모든 상속인의 인감 날인이 필요하다고 함. 상속인이 5명이나 되고 거주지역도 다 다른 관계로 주된 상속인이 여러장의 인감 날인 서류를 모아 제출하려 해도 안된다고 함. 법원 등기도 여러장의 인감 날인 위임장으로 접수가 가능한데 고객편의는 생각하지 않는 은행 편의 행태의 나쁜 관행을 고쳐야함. (국민신문고, '23.12월)
- 공동상속인 1인이 자기 지분만큼 찾기위해 모든 상속서류를 갖추고 은행에 방문해도 1인에게만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함. 어떠한 규정에 따른 것인지 물어봐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며 계속 지급을 거부함. (국민신문고, '23.2월)
- OO은행 계좌의 상속재산을 찾기위해 상속인 4인의 대표로 위임장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했으나, 해당 은행의 양식이 아니라며 서류 접수를 거부함. 동일한 위임장으로 □□은행과 ◇◇은행에서는 받아들여 졌는데 법령도 아닌 해당 은행 내규로 이렇게 거부 하는게 맞는 것인지. (국민신문고, '20.2월)



V. 개선방안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기능 개선

- 현 조회서비스는 분산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보유 기관 파악은 일부 도움이 되나, 실제 상속 준비에 필요한 세부 정보제공 등의 기능성은 여전히 제한적
 - 따라서 조회서비스의 완결성을 높여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인의 상속과정 사전준비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고도화 필요
- 조회 서비스 미연계 기관에 대한 조회 확대 및 정확한 잔액 정보 등 제공으로 '상속 금융재산 조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예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확대·개편

【 개선 방향 】

조회 기능 강화로 상속인이 각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① 상속 여부 판단(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② 상속인 간 분할 합의 결정, ③ 상속재산 지급 신청 준비, ④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연계 등이 가능한 수준

- ▶ **【조회범위】** : 조회 불가 금융기관이 없도록 조회 대상 금융기관 확대
- ▶ **【조회내용】** : 예치금 잔액, 부채 현황, 주식 현황(주식명, 보유수량) 등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운영에 반영

2 상속 금융재산 표준 처리 기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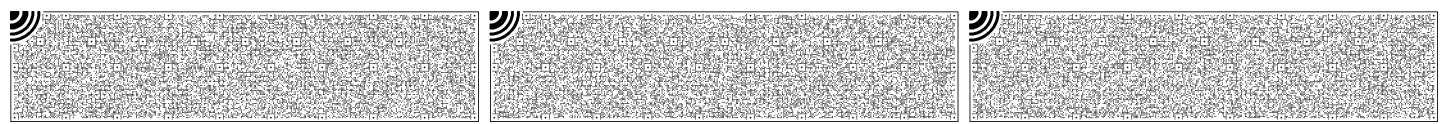
□ 상속 금융재산 처리에 관한 공통기준(표준약정 등) 마련

- 금융재산 상속 처리·절차가 수많은 금융기관별 내규 등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는 것은 국민 권익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상속 처리 기간 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금융기관 업무부담 증가
- 전 금융권 공동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상속 처리절차, 제출서류 등을 표준화할 수 있는 공통기준 수립

〈내용 예시〉

- ①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 (예시) 상속순위별 공통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서류), 상속유형별 추가서류(분할합의서, 위임장, 유언서 등) ※ 과잉요구 금지
- ② **금융기관 신청서식 표준화**
 ※ (예시) 표준 신청서 구성, 피상속인 및 상속인 정보, 상속지분 또는 금액, 피상속인 계좌정리(해지, 승계 등), 상속인 실명지급계좌 등
- ③ **상속 처리 절차 표준화**
 ※ (예시) 상속 신청 → 서류 제출 → 상속인 실명확인 → 금융기관 심사 → 이의신청 절차 → 상속재산 지급 등의 업무처리 표준화
- ④ **상속인 표준 통합동의 체계(상속인→위탁(지정) 금융기관→각 금융기관)**
 ※ (예시)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제3자 제공, 실명확인 업무위탁, 제출서류 (개인정보 등) 처리 위탁 및 공동 이용 등
- ⑤ **기타 처리기한 및 유예(이의신청 등) 기간 등**
 ※ (예시) 제출서류 확인(심사), 보완요청, 정산가산 상속인 공지, 이의신청, 최종 결과 공지, 상속인 동의, 상속재산 지급 등 처리기한 명시

⇒ 관련규정 등 제정



3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서비스 체계 구축

< 개요 >

- 지정은행과 금융시스템 연계를 통한 '상속 서류 통합 접수 및 검증 체계 구축', 상속인의 실명확인·서류접수·상속심사·지급 등 금융기관 상속 업무를 전산화, 기존 대면 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 단순승인 상속부터 단계적 시범시행, 장기적으로 전 상속 범위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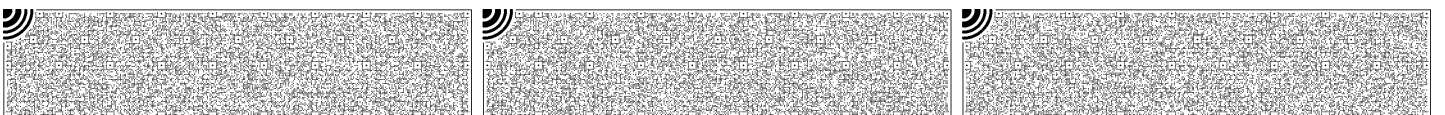
1 통합 접수·확인을 위한 '지정은행(Anchor Bank¹⁾) 운영'

- 상속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은행별로 통합 방문 접수 창구인 '지정은행'을 운영, 상속인 대면 실명 확인, 제출서류 등 접수·확인 및 타 금융기관으로 제출서류 이송 등 위탁업무 수행

< 운영 예시 >

- **(통합 접수 창구 운영)** 「금융실명법」에 따른 거래자 실지명의 확인 및 제출서류 접수, 상속인 대면 의사 확인 등 타 금융회사 위탁수행
- ※ 최초 1회 방문 신청은 ▲ 디지털 취약계층인 70세 이상 고령 상속인이 78% 이상인 점 (‘20~’24년 상속세 신고), ▲ 상속인 대면 및 의사 확인을 통한 금융권 리스크 감소 필요성
- **(상속재산 신청 안내 등)** 상속인 통합지급시스템 가입*, 개인정보 등 통합동의**, 청구 금융기관 지정, 실명 수취계좌 등록
- * 각 금융기관이 상속 처리를 위한 금융 시스템 연계를 통해 실명인증, 서류 접수·보완(송수신), 이의신청, 상속재산 정산 확인 및 수취동의 등 이용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동이용, 고유식별번호, 제출서류 타 금융기관 이송(위탁) 등

1) 여러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진위 확인, 자금의 정산, 리스크 관리 등 핵심 업무를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다른 참여 기관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하는 은행 개념



- **(수탁기관 자료 이송)** 제출서류 디지털인증(위·변조 방지 등) 전자문서화*, 통합지급시스템 등록 및 상속인 지정 각 금융기관으로 이송**

* 「전자문서법」에 따른 금융기관 전자서명, 보관 및 타 기관 송·수신

** 수집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완사고 방지를 위해 기관 간 문서 송·수신이 완료된 경우, 발신기관(지정은행)의 데이터는 '자동 폐기'하여 개인정보 보관(집중) 최소화

※ 각종 신청서류, 개인정보 통합동의 등 전자문서 생성이 불필요한 경우는 전산처리

- **(소액 재산 지급 간소화)** 소액 상속재산(예시 100만 원 이하)*의 경우 '상속재산 Fast-Track 정산제' 도입, 지정은행이 '실명확인 및 지급 서류심사를 병행'하여 상속재산 정산을 신속 처리하는 방안 검토

* '상속예금 잔액 구간별 현황'에 따르면, 잔액이 100만 원 이하인 계좌가 96.6%에 해당(금감원/25. 5월 기준)

※ 「금융실명법」 제3조는 100만 원 이하의 송금은 실명 확인 의무 면제, 또한 금융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액 다 계좌 신속 처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② 금융시스템 연계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상속 처리

○ 각 금융기관 간 전산시스템 연계, 지정은행을 통한 상속인 제출 서류의 비대면 접수(송·수신) 및 상속 재산 지급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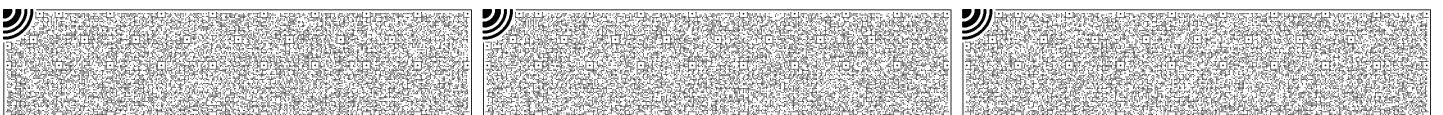
- 지정은행의 '실명 확인, 서류접수·확인, 상속인 전원 동의 절차' 등 1차 검증과 각 금융기관의 2차 비대면 검증 체계를 구축, 한 번의 신청으로 피상속인 재산을 보유한 모든 금융기관이 상속재산 지급 처리를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구현

※ 지정은행(통합 접수·확인), '상속인 ↔ 각 금융기관'(제출서류 전산화) 비대면 상속처리

〈운영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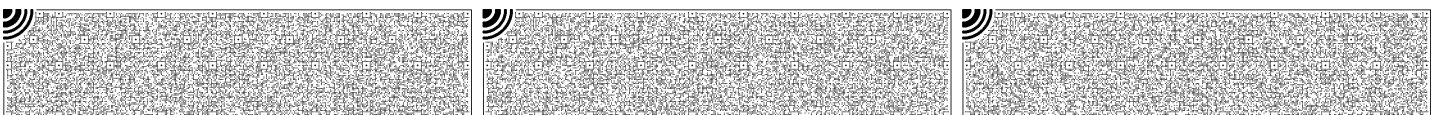
- **(상속자료 입력)** '지정은행' 이 제출서류, 각종 동의* 등 시스템 입력

* 본인인증,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및 공동이용(상속재산 보유 기관), 문서이송



- **(제출서류 확인)** 상속인이 상속재산 신청(제출자료 송·수신)을 지정한 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서류 등 확인
 - ※ 상속인(서류제출) ▶ 지정은행(실명확인·접수, 전자문서화 및 이송) ▶ 개별 금융기관(접수)
- **(상속 심사)** 정당한 상속인 자격, 상속인 간 분할 합의 내용, 피상속인 계좌정리 요청사항, 상속재산 수취 실명계좌 등 확인
- **(보완요청)** 상속인 제출서류 미비 등 필요시 보완사항 통지
 - ※ 상속인은 시스템을 통해 본인인증 후 해당 금융기관에 서류제출 방식으로 보완
- **(심사 결과 통지)** 각 금융기관은 1차 심사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 상속인 열람 안내(SNS 등) 통지
 - ※ 금융기관별 결과를 취합, 상속재산 정산서 형태(양식)로 시스템 상 상속인에 공개
 - ※ 모든 열람 기록은 시스템 로그 기록화 하여 부정 접근 방지
- **(유예기간)** 상속인의 ‘1차 심사결과 열람’, ‘이의 신청’ 등에 필요한 일정 기간(1~2주 이내) 부여
- **(최종 승인 및 재산 이체)** 금융기관의 최종 심사결과 시스템 등록, 상속인 승인(확인)을 거쳐 상속인별 실명계좌로 재산 이체

⇒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예〉 단계별 흐름도

구분	절차 및 내용	개선방안
상속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 확인 ▶ 상속 순위, 공동상속인 등 ▪ 피상속인 자산확인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서비스 ▪ 상속 결정 ▶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 상속재산 협의 ▶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유언, 유류분 포함) ▪ 신청서류 준비 ▶ 금융권 표준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등 준비 	<p>① 상속조회 고도화 ② 표준기준 수립 ↓ 상속준비 간소화</p>
신청·접수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width: 5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①상속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서, 제출서류 등 지정은행 방문 제출</p>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width: 5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②지정은행</p> <p style="text-align: center;">상속인 본인확인, 서류접수, 개인정보 등 통합동의서 징구</p>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width: 5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④지정은행</p> <p style="text-align: center;">상속인 제출서류 전자문서화, 해당기관 전자문서 이송</p>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width: 5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③상속인</p> <p style="text-align: center;">통합지급시스템 가입, 실명수취계좌 입력, 정보제공 금융기관 지정</p> </div> </div>	<p>③ 지정은행제 통합접수 ↓ 원스톱 신청</p>
상속심사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width: 33%;">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⑤각 금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 확인 - 제출서류 - 분할합의 내용 - 피상속인 계좌정리 - 상속인 실명계좌 등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width: 33%;">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⑥금융기관↔상속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보완(필요시) ※ 시스템 본인인증 보완자료 제출 등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width: 33%;">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⑦각 금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결과 통지 ※ 시스템 결과등록 SNS 등 안내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width: 33%;">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⑩상속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확인, 시스템 승인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width: 33%;">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⑨각 금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결과 등록, 상속인 통지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width: 33%;">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⑧금융기관↔상속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기간 ※ 상속인 결과확인, 이의신청 등 </div> </div>	<p>④ 전산시스템 ↓ 비대면 처리</p>
상속처리	<p>⑩각 금융기관 상속인 실명계좌로 재산 이체 및 계좌정리</p>	

※ 위 흐름도는 '통합지급서비스 구축·운영'에 대한 예시로, 금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상속 금융재산 비대면·전산화 서비스 도입에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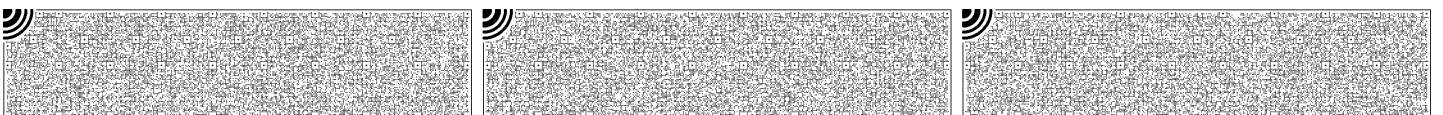


Ⅶ.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금융감독원

□ 조치사항 및 기한

구 분	조치사항	조치기한
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기능 개선 - (조회범위) 조회 불가 기관이 없도록 대상기관 확대 - (조회내용) 잔액, 부채, 주식(주식명, 보유수량) 등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운영에 반영	'26. 12월
② 상속 금융재산 표준 처리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 금융재산 처리에 관한 공통기준(표준약정 등) 마련 ⇒ 관련 규정 등 제정	'27. 6월
③ 상속 금융재산 통합 지급서비스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접수·확인을 위한 지정은행 운영 ○ 금융시스템 연계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상속 처리 ⇒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서비스 체계 구축·운영	'27. 6월



붙임 **관련 법규**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3조(협약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약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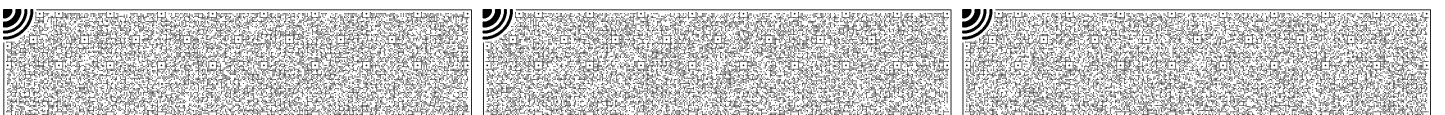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삭제 <2013. 8. 6.>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受入)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



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마. 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다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를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를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다. 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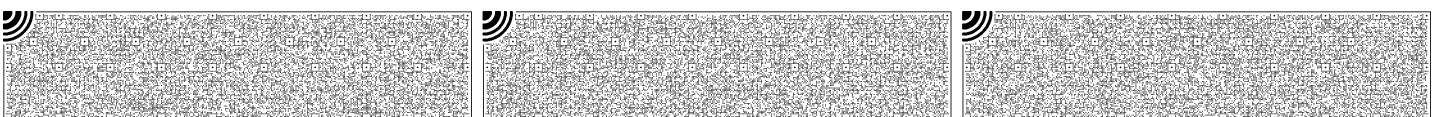
2. 법인의 경우: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제3조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 다만,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4. 외국인의 경우: 제3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서류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업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1.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2.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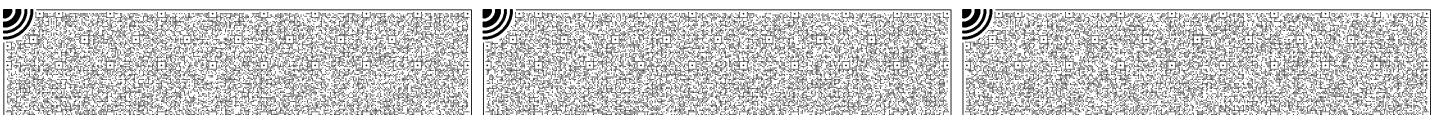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전자정부법

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① 국가는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부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6월 15일

위원장 정 일 연

위원 한 삼 석

위원 조 소 영

위원 이 명 순

위원 홍 봉 주

위원 김 태 영

위원 신 대 희

위원 최 진 영

위원 권 석 원

위원 최 명 규

위원 이 흥 주

위원 이 태 한

위원 김 바 올

위원 신 상 욱

위원 허 재 우



정 본 입 니 다 .

2026. 6. 15.

국 민 권 의 위 원

